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 지 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, 「수도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외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절수설비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세계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충청도민의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한 절수와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며,

- 2001년 이후 환경부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(기기)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,

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이에 대한 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규정하여 절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절수설비 등을 지원 촉진 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참 고

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-	-	22.12.30	20.11.9	23.2.23	-	23.4.6	17.9.29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20.7.15	19.1.4	17.9.20	20.5.29	20.8.6	-	17.8.3	17.12.29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고,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에서도 2010년부터 수도법을 근거로 공중화장실, 숙박·목욕장·체육시설 등에서 절수설비(기기) 등 설치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참 고

- **절수설비** :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
- **절수기기** :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변기나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

○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4조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·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5조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, 우수사례 발굴, 도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조례안 예고('23. 6. 2. ~ 6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행정·재정적인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민의 수돗물

절약과 절수 습관을 생활화하고 더 나아가 수자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 조례제정 이후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종합적인 관리 역할 및 수도사업자의 행정·재정적인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